

2024. 11. 27.(수) 제 4 2 2 회 정 례 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의 개정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O 목적 및 정의 조항 정비(안 제1조 ~ 안 제2조)
-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 안제8조)
- O 스마트농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 O 법정계획인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조항 신설 (안 제4조의2)
- O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 O 위원회 규정의 정비(안 제9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2023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2024년 7월 시행되었음 이법 제5조에서는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4항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 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발췌>

- 제5조(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 ⑥ 생략
 - 또한, 기존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 법정계획의 내용과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 그 외에 본 조례는 농업 뿐만 아니라 어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O 이에 상위법령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제명의 개정은 본 조례가 농업 뿐만 아니라 어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농업을 농어업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안 제1조~제9조까지 용어를 모두 정비하였고 타당하다 판단됨
- O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므로 이를 명시 하고, 해당 조례의 목적을 간결히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O 안 제2조는 용어정의의 내용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문 상 충청북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 여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5조에 따르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기존의 5년 단위 계획은 충북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충청 북도 스마트농어업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안 제4조에 명시하고 법정계획과 구분을 두었으며, 법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법에서 위임하 고 있는 공표 방법은 별도로 안 4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이 개정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5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충북도에서 추진중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정책역량과 재정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충북도의 스마트농어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보여짐

다.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 및 조례의 지원 범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타당성) 이에 따라 제명, 용어정의, 스마트농어업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 전체적인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O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이 조례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스마트농어업에 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 육성에 기 여할 것이라 판단됨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한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스마트농어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